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9월16일(수)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4)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6)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9)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0)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4)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5)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7)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6)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4)
-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1)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9)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6)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4)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9)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2)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3)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8)

상정된 안건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3) 3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1) 3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2) 3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9) 3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4) 3
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6) 3
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9) 3
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0) 3
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4) 3
1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5) 4
1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7) 4
1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6) 4
1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4) 4
14.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 4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3) 4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1) 4
1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9) 4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6) 4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4) 4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9)	4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2)	4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3)	4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8)	4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서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2건의 법률안과 법 개정에 관한 청원 1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위원회 언론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3)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1)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2)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9)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4)
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6)
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9)
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0)
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4)

1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5)
11.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7)
1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6)
1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4)
14.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훈 외 51,97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2)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3)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1)
17.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9)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6)
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4)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9)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2)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3)
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28)

(10시12분)

○소위원장 서일준 의사일정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남동일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현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금지청구 규정을 도입하는 5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2쪽입니다.

법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금지청구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상품대금의 감액 등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지청구제도는 이미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에 도입되어 있고 공정거래 분야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금지청구의 소 제기에 관하여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면 사건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제도는 신속한 구제와 피해의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정문 의원안과 같이 작위의무를 제외한 부작위의무만을 금지청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또한 침해는 특허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점, 최근 도입된 하도급법에서도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침해행위 대신 위반행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것은 소의 제기를 확대하여 그 편의성을 제고하고 담보 제공 명령을 통해 금지청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칙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금지청구에 대한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검토의견에 따른 수정의견은 10쪽과 11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훈 위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소송 남발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금지청구권이 피해구제 목적보다 어떤 협상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소송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현재 부작위의 무 위반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 법안들과, 상정돼 있는 법안들과 같이 병합해서 심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이강일 위원 그런 의미로 논의를 다음으로 넘기지요.

○박상혁 위원 그런데 하나만 질문하고……

○소위원장 서일준 말씀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박성훈 위원님 말씀 나중에 충분히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적용례를 두자라는 의미는 어떤 건지 전문위원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한번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지금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돼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좀 불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뒤쪽의 11페이지에 보시면 제35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법 시행 이후에 대규모유통업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정확히 시행 적용례를 두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적용례를 두는 것과 안 두는 것의 차이점이 뭔가요, 시행은 되는데.

○전문위원 구현우 만약에……

○박상혁 위원 법적 실익이 어떤 거지요?

○전문위원 구현우 이걸 두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부터가 적용되는지……

○박상혁 위원 법은 시행되는데 적용이……

○전문위원 구현우 그런데 시행 전에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 계속 있었을 경우에는……

○이강일 위원 그러면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전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구현우 시행 전의 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출 위원 일종의 소급례를 적용하자는 말이지요?

○박상혁 위원 소급은 아닐 거고요. 소급은 당연히 아니고……

○전문위원 구현우 소급례 적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불소급을 하자는 얘기지요?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셨으니까 박성훈 위원님 제안처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8건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현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은 제조물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 또는 완화하는 9건의 법안 및 청원안 관련 자료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입증 책임의 전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3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가 첫 번째,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두 번째, 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하는 원인으로부터 초래하고 세 번째,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가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대신 제조업자에게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준호·권성동·염태영 의원안 및 청원안 제3조의3제1항은 제조업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어 입증책임 전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등 기술이 복잡한 제조물은 피해자의 손해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 논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입증책임 전환 방식의 경우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일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간접사실이 증명된 경우 결함 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증책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준호·권성동·염태영 의원안의 경우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기록물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영상이나 기록물 등이 없는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완전 전환의 경우에는 민법상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해외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위원 질문이 있어서 여쭙볼게요.

그동안에 10년간 371건의 급발진 의심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한 건도 인정이 안 됐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현재까지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현 위원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행법처럼 해서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사실 급발진 현상에 대해서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발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논의할 문제지만 입증책임을 좀 더 완화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피해자가 자료를 조금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국토부같이 관련 기관에서 페달 블랙박스라든가 그다음에 EDR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고 또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준현 위원 공정위 쪽에서는 기록물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제도개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자동차관리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 제조물 책임에 관한 일반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담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강준현 위원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입니다.

보완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2009년도에 토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피해를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런 오작동 하는 게 없어서 소비자들이 주의만 제대로 기울인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미국에서도 발견된 오작동이나 급발진이 만약에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설명드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이라든가 추정 규정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좀 더 만전을 기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기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급발진 현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관련 당국에 신고를 당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급발진 사고가 외국에서 된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토요타 급발진이 지금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상혁 위원 아니, 결과는 어떻다 치더라도 소송이 제기당한 사례 또는 신고를 당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그것까지는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저희가 해외에서 급발진으로 국내 기업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외에서도 급발진 자체의 인정은 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도 그게 규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여러 가지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일단 답변을 한번 주시긴 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도 보면 지난 10년간 총 371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고, 물론 그중에 일단 급발진으로 인정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사회적인 갈등이 되게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어떤 특정 장치를 뒀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관련해서 자동차 업계와 아니면 소비자단체 간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게 영상장치가 되었건……

결국은 엑셀이나 브레이크의 오작동이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차량의 구동장치나 제동장치에 있어서의 결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술도 많이 좋아져서 거기에 뭔가, 본래 자동차에 제조업자가 뭔가 설치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됐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쭙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국토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EDR이라는 사고기록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Event Data Recorder)를 자동차에, 신차에 장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25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EDR의 기록 항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록 조건들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최은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게 그렇게 부착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을 때 관련된 기록저장물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로 충분히 이게 급발진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가, 자료가 축적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그러니까 아직은 급발진이다, 아니다…… 사실 업계의 얘기는 급발진이라는 현상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기계장치, 전자장치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로 급발진으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의 오류 아니면 제어하는 브레이크나 배기가스, 급발진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급발진 현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여기처럼 10년에 371건 정도 되니까 의심은 하되 명확하게 규명은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급발진 사고가 통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주의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소비자일 텐데, 그래서 노년층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완해 주는 지원책 이런 것들은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예방을 위해서 2009년부터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도입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기록이 축적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업계에게 승용차는 29년도부터 도입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출 위원** 지금 급발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결책을 제시 못 하고 있는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게 입증이 어렵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에 이게 인정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급 영향의 막대함, 그것 때문에 겁을 내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자체가 개미와 공룡의 싸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당하는 개미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국민 피해가 돼서 이것은 구제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기계를 다루다 일어난 사고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원인을 찾으려면 못 찾아요, 이것.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어느 게 문제가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기계의 확인이 있는 것은 기술로 가능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가속의 변화가 정상적이나 비정상적이나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브레이크를 약하게 이만큼 밟았는데 속도가 이만큼 나왔다, 이 정도가 정상인데 급발진돼서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기계 이상이지요. 그런 장치로 풀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으로서 이런 장치를 앞으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고민을 지금 이 법을 보고 하게 됐는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한 취지로 법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요 앞으로 안에 부품 하나 넣으면 돼요, 제가 볼 때. 그런 기술 충분히 와 있습니다, 지금. 가능해요. 많이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를 풀지.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일 위원** 어쨌든 이것도 국힘 의원님 중에서 발의를 하실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또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급발진 사태가 벌써 수백 건이에요. 그런데 제조사의 귀책사유가 나중에라도 밝혀졌을 때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더 커지기 전에 어떤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의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지요. 거의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착안하나 하면 자율주행차에서도 브레이킹해야 되는데 액셀러레이팅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서 상용화 단계에서 그게 자꾸 진입장벽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이런 걸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차량에도.

과액셀러레이팅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기어를 넣고 액셀을 세게 밟았을 때 갑자기 웅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웅 소리도 점진적으로 웅 이런 식으로 나는 건데 증언들이라든가 녹취돼 있는 것 보면 갑자기 웅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1·2단 저단 기어에서 세게 밟았을 때는 웅 소리가 빨리 나지만 고단 기어에서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AI 시대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자동차가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액셀러레이터를 세게 밟았을 때 저는 왜 분명하게 주의 문구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음성으로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계십니다.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땡땡’ 이런 것만 나와도 사람이 대번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그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액셀러레이터를 계속 세게 밟고 있으면, 일정 시간 동안 너무 세게 밟으면 바로 ‘땡땡’ 하면서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라고 주의만 줘도 대번 알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박대출 위원님이나 해서 법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공정위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공정위의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은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증 책임을 전환하는 데 대해서 공정위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완화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호시……

○소위원장 서일준 완화는 다음 차례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이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서 따져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여러 자료제출 명령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 핵심 기술들을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인의 과오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정말 제조물 책임에 의해서든지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제조물 책임으로 주장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일 수도 있는 정보들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의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저희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면서 비밀유지의무를 같이 도입을 해서 거기도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 지우는 제정 규정까지 같이 패키지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는 말씀

이신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시지요.

○한창민 위원 조금 전에 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지금 공정위 입장에서는 신중검토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완전 전환에 대해서 신중검토입니다.

○한창민 위원 사실 완전 전환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알 텐데 어디까지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좀 곤란하다. 공정위에서 이 견해를 하려면 조금 더 명확하게 검토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으로 보면 그것을 판단하기가 저희들도 어렵고, 박성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더 이러한 법안들이 제출돼 가지고 다음에 검토할 때는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이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전에 검토의견서를 좀 더 촘촘하게 작성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저는 길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이 논의와 조금 상관관계가 있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제가 광고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님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공동 토론회를 곧 개최합니다. 9월 21일 날 2시에 의원회관에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체계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저도 거기에 공동 토론자로 참여를 해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고령 운전 종사자, 특히 대구 지역 택시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비슷한 그런 걸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어서 함께했는데 많이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드리면 오늘도 되게 중요한 법안들이 이렇게 우리 소위에 상정됐는데 마침 두 분 소위 위원장님 다 계시니까, 실은 이 자료가 보통 그 전날 의원실로 오고, 저는 오늘 아침에서야 봤거든요.

특히 이렇게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갈등도 되게 크고, 좀 전에 박성훈 위원님이 입증책임 완화 관련해서 물었는데 ‘그건 그다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실은 이 자료를 우리가 잘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는 최소한 이런 자료가 한 3일 정도 전에는 배부가 되어야 공부도 하고 또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 전문가 의견도 물어보고 또 그전에 필요하면 관련된 부처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오고 당일 아침에서야 의원들이 볼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에 계신 수석전문위원님도 이런 자료 같

은 것들을, 아마 두 분 위원장님이 다음 법안이 언제 뭐가 상정될 거더라는 걸 미리 지침을 주시고 해야 이런 것들 준비가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잘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맞습니다. 전 다 양당 간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들이야 결정이 된 다음에 논의를, 아마 검토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를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격주로 법안소위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의 쉬는 주에는 먼저, 최소한 월요일·화요일 정도는 되어야, 월요일 정도 의제가 되면 그 주에 충분히 검토해서 나오고 의원님들·보좌진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하고 서일준 위원장님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입증책임 완화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개정안은 현행법상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결합 추정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영 의원님, 서왕진 의원님, 주호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피해 요건 중에서 한 가지로, 보시면 허영 의원안 요건을 보시면 ‘제조물이 ①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 시’ 이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 두 요건은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서왕진 의원님, 주호영 의원님도 마찬가지로요. 그다음에 이현승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의 3개 요건 중에서 2개 요건만 남기는 것입니다.

현행 제2호의 입증책임 요건을 삭제해서 피해자가 정상적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하고 결합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를 증명하는 요건 두 가지만 남기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서왕진·주호영·이현승 의원안 및 청원안 제3조의2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결합 및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입증책임 완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 기술이 복잡한 제조물은 결합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되어 피해자의 손해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허영·서왕진 의원안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한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반면 주호영·이현승 의원안과 청원안은 모든 제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증 곤란의 원인은 정보의 편재에 있고 정보 편재는 모든 제조물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계가 상당히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제조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건입니다.

결함 추정 요건과 관련해서 허영·서왕진·주호영 의원안은 현행 제2호와 3호를 삭제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의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이현승 의원안은 현행 2조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먼저 허영·서왕진·주호영 의원안은 별도의 요건 없이 정상적인 사용 중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청원안의 경우 정상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기술이 복잡하여 피해자가 입증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간접 사실 없이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추정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현승 의원안과 같이 현행 3개 추정 요건 중 피해자가 특히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하는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해당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부담을 다소 줄이면서도 제조업자에게 전면적인 입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내용은 이현승 의원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건 1호·2호·3호 중에서 2호의 요건, 이것은 사실 제조업자가 직접 통제하는 설계나 제조나 조립·품질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서 1호와 3호, 그러니까 정상 사용 상태에서 손해 발생을 했고 또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이 두 가지 요소의 증명을 통한 경우에는 결함을 추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쟁점 사항 중에서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하는 원인으로부터 초래’된 것만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이강일 위원 그런데 3번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이 입증책임에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완화시키나 안 시키나 거의 수준이 똑같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체나 이런 쪽은 이 법 자체를 건드리는 걸 터부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할 것 같은데 완화를 시키겠다고 만약에 시장에다 얘기해서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입은 것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

해서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번만 가지고 1·3번으로 그 부담을 덜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 안의 절충이 있다면 그것은 완화로 인식을 하겠지만 1·3번이 그대로 존치되는 상태에서 이게 완화될까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증책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수 있는 게 될까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피해자들의 입증책임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추가적인 호를 삭제해서 부담을 더 덜어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2호는 입증이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만이 아니고 사실은 미국이나 EU나 이런 해외 사례를 볼 때도 1호 요건만 가지고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호 정도의 인과관계의 개연성 정도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기준을 좀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사실은 피해자들 입증의 부담이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제출명령제를 강화해서 자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충분히 피해자들 입증의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글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번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2번을 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이 상당히 덜어졌다거나 완화됐다고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걸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갔을 때 아마 지금과 똑같은 절차나 똑같은 준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실효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이걸 실효적인 부분까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한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지금 이강일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실 2호·3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2호만 없애고 3호를 남겨뒀을 경우에는 저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하면, 사실 피해자와 제조사와의 힘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을 균형감 있게 하려면 이쪽의 부담을 훨씬 더 가중시켜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검토의견을 보더라도 민법상의 입증부담의 원칙을 거론하면서까지 얘기한다면 저는 이 법의 취지의 실효성을 너무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2호와 3호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검토보고서를 볼 때마다 해외 입법례를 얘기하는데 해외에서 그런 입법 사례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성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적인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입장에서 접근을 해 주십시오. 너무 소극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호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보고서에 왜 이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충분히 입증책임 완화의 실효성을 갖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백번 공감하고 저희도 사실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3호 삭제도 고려는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 취지가 훨씬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사실은 3호까지 삭제하면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 비해서 조금 더 기업 부담, 어쨌든 기업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고려할 필요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입증책임에 있어서의 부담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어 보니까 전문가들이 2호 삭제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더군다나 자료제출명령제를 통해서 자료 취득의 수월성을 확보해 주면 상당한 제도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한창민 위원 짧게만 추가……

○소위원장 서일준 예.

○한창민 위원 사실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최소한, 소극적으로 대응할 텐데 형식적으로 그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3호 같은 경우 정확하게 문구에 대한 해석으로 볼 때 2호가 없어진다 해도 3호 때문에 책임을 덜 수 있는 요건이 너무 확대돼 있어요. 그러면 3호를 바꿔 가지고 책임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호성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3호가 어떻게 보면 결함하고 손해 간의 인과관계 개연성을 보는 건데 인과관계가 비단 제조업자 쪽에만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소비자 쪽에…… 예를 들면 특이한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피해자 쪽의 상황들도 있는 거라서 그 거를 원사이드하게 제조업자들이 모든 걸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창민 위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입니다. 부담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송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자는 게 제조사 입장에서 입증책임인데 인과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서도 그것을 같이 증명하게 되면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실효성이 확보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차원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1·2·3호를 간단하게 쉽게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같은 경우 정상 사용이라는 것은 차가 일주일 내에 출고가 돼서 내가 새 차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잘 운전을 한다라는 게 1호 정상 사용이고요. 2호는 자동차를 뜯어

보니 엔진이나 모든 게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사업자가 제품을 잘못 만든 것에 대한 지배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석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게 2호고, 3호는 최소한도의 인과관계로서 내가 새 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내가 충분히, 운전면허가 있고 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결함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최소한도의 소비자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하면 되다 보니 2호만 없다 하더라도 제조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로부터 제외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의 판례 등을 통해서도 3호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건강상 이런 부분들을 판사님들이 소비자들에게 질문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셨던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2호만 삭제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검토한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창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하면 사실 자료제출명령하고의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때 내가 문제없다는 것을 피해자 측에서 증명하는 정도 수준이면 된다고 하면 예시가 좀 불분명하지요. 왜 그리냐면 그 부분이라면 내 건강 상태나 그때 나의 주의력이나 여러 가지의, 피해자로부터 원인이 없다는 정도 수준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제조사 쪽에 있는 원인들은 자료제출명령을 통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획득하고 있다는 것만 하는 정도 수준으로 판례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3번을 남겨 두더라도 부담은 좀 완화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한 가지의 예시가 아니라 실제 이 조항을 남겨 뒀을 경우에 그렇게 작동하냐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2호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2호 때문에 인정이 안 된 판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소비자가, 자기네가 설계도를 주면서 이대로 사업자에게 만들어 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자기네들의 지배영역하에 만든 게 아니고 소비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줘’라고 했는데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2호 관련돼 가지고 지배영역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3호 예시를 말씀드린 거예요.

○**소위원장 서일준** 다음, 최은석 위원.

한 위원님, 다 끝나신 거지요?

○**한창민 위원** 이 부분은 오늘 것 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래요.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2호를 삭제하게 되면 제조사나 아니면 피해자 입장 전체를 다, 양자의 균형적인 시각을 감안할 때 미국이나 EU의 현재 기준하고는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

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문안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EU 기준은 1호하고 3호 정도 유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1호하고 3호 유지하면 미국이나 EU의 지금 현재 기준…… 저도 이것 보니까, 단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조사에 부과되는 책임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권익 같은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나 EU 기준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도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저희가 업계 간담회를 실시를 했는데요. 2호·3호 다 삭제하는 것은 EU나 미국에 비해서 더 완화되는 측면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입차 업체라든가, 우리나라가 수출차 하는 데 입장에서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EU나 미국 사례로 1·3호 정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은 되지만 조금 공감대는 형성했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6페이지에 있는 입법례지요? 원문의 표현과 이게 표현이 어떻게 지도 모르겠고 이 의미가 어떻게 법정에서 해석되는지 딱히 잘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규정과 EU의 규정 이런 정도로 하고, 이현승 의원님 안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평가한다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저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자 개인이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 경우처럼 입증책임 완화를 좀 폭넓게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호만 빼면 정부 측 입장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미국처럼 피해 입증 완화를 시키는 데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하고 비슷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2호만 삭제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2호 삭제하면 입증책임 부담은 미국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러면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호·3호 삭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말씀 들었습니다.

법 개정안이 나오면 저희가 먼저 관계부처랑 관계 기관들 의견을 듣는데요. 그게 2024년도, 25년도 때는 전반적으로 부담이 많다는 반대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8월 말하고 9월 초에 다시 한번 업계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한번 했고요.

○**소위원장 서일준** 금년 8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예, 지난달입니다. 자동차 업계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대한상의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세 군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완화를 하든 전환을 하든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의견은 났지만…… 특히 저희가 자동차 급발진이 문제가 많이 돼서 자동차 업계 얘기를 들어 보니 그래도 EU에서 할 때는 1호·3호 정도, 정상 사용이었고 거기에 인과관계 정도 입증하면 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으로, 2호를 삭제하는 정도로 하면 자기네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EU나 우리나라랑 이렇게 동일하게 되다 보니 어느 정도 공감은 하겠다라고, 그 정도 수준이면 공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추후 논의될 자료 제출명령에 꼭 비밀 엄수 의무 이런 것들은 넣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결함의 증명,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채현일·염태영 의원안은 자료제출 신청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자료제출명령의 불응과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후 해당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보다 자료 확보를 쉽게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먼저 제조물의 설계·제조과정 등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결함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제도의 도입으로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에서 이미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개정된 제조물지침은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업자 등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 대상, 자료제출명령 불응 등에 대한 불이익 규정 등의 구체적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제출명령 대상과 관련하여 허영 의원안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채현일·서왕진·염태영 의원안은 여기에 ‘결함의 증명’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현승 의원안은 ‘결함의 증명,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은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충족 및 책임 범위 판단에 필요한 전반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료제출명령 대상을 손해의 증명, 결함의 증명,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불이익 규정입니다.

채현일 의원안과 염태영 의원안은 자료제출 신청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자료제출명령 불응과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제출명령 불응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를 공격·방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각하하도록 하는 등 허영·서왕진·이현승 의원안에 비해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가 제조업자에게 집중된 제조물책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채현일 의원안과 염태영 의원안은 자료 훼손·사용불능에 대한 사실인정상의 불이익은 민사소송법 제350조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일정한 경우 해당 자료를 공격·방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가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와 당사자의 방어권 및 실체적 진실 발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때문에 도입하는 자료제출명령 대상은 손해, 결함 그리고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등 폭넓게 필요한 자료를 증명의 대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명령의 불응에 대해서 불이익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다만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이해관계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이해관계자들은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 공정거래법인 하도급

법에 도입돼 있는 그런 자료제출명령 정도 수준으로 원하며 미국같이, 미국형 디스커버리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 정도면 받아들이는 데 문제 없을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밀 엄수 의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셔서 뒤에서 논의될 부분에서 비밀 엄수 의무, 위반했을 때 제재까지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위원장님, 2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중검토이지만 비밀유지명령과 함께 도입할 필요는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예.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37쪽입니다.

비밀유지명령제도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영업비밀을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허영·이현승 의원안은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하는 경우 피해자의 증거수집권과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자료제출명령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한편 허영·이현승 의원안은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제출되는 것이고 일단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후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벌칙 수준과 관련해서는 유사 입법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동일한 수준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현승 의원님 그리고 허영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혹시 재계, 업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 관련된 수용성을 높이려면 비밀유지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벌칙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금 더 안심하고 자료제출명령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텐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높은 형벌일 수도 있고 비밀유지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영업비밀 같은 경우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른 공정거래법이나 여기서의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수준을 고려했었고요. 다만 제조물책임법의 사안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서 그 수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전문위원 구현우 위원님, 참고로 41페이지에 보시면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제229조의 2에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특허라고 하는 독점적 권한에 대해서 침해했을 경우에 이런 거지요?

○전문위원 구현우 예.

○박상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해 볼 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도 하고, 실효적으로 나오더라도 소송 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명확한 신뢰를 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말한 특허와 비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법적인 안정성, 수용성 등을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정도일지는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 부분은 박상혁 위원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성훈 위원 저도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생각과 같은 입장이고요. 이게 예를 들어 이현승 의원님 안의 경우를 보게 되면 특허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제재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벌칙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창민 위원 질문 하나만……

○소위원장 서일준 한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창민 위원 저도 비밀유지 관련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부분과의 균형점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높이고,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도 아까 채현일 의원님 한 것에 대해서 민법에 있으니까 굳이 둘 필요 있지 않냐 하는데 사실 이건 특별법의 성격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전문위원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현우 53쪽입니다.

기타 청원안 개정사항입니다.

청원안은 첫 번째, 가속제압장치 등 미장착 시 자동차 설계 결함 인정 및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 부과. 두 번째, 소 제기 전 자료제출 의무 부과. 세 번째, 제조물의 결함, 손해,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 적용되는 증명도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인 가속제압장치 등 미장착 시 자동차 설계 결함 인정 및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안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시 해당 자동차에 가속제압장치 또는 비상정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설계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가속제압장치 또는 비상정지장치가 급발진 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기대되는 측면도 있으나 해당 장치의 장착 여부와 급발진 사고의 인과관계 및 급발진 사고 방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원안은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EU에서 장착하도록 한 것과 동일한 사고기록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하도록 하고 첨단운전지원시스템 기능의 작동데이터와 주행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시 기록된 정보를 확보하여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시 차량의 가속·제동장치 조작 여부 등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과 결함 등의 분석에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책임의 요건, 면책사유, 연대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이므로 제조업자의 자동차 장치 장착 의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소 제기 전 자료제출 의무 부과 등입니다.

청원안은 피해자의 요청 시 제조업자는 소송 전에 요청받은 자료를 법정 외에서 미리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에 급발진 사고 피해자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의 자료보호 권리 등 균형성을 갖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청원안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결함·손해·인과관계에 관한 증명도를 현행 판례상 고도의 개연성보다 낮은 50%+α의 수준으로 완화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영역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수치화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 민사소송 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대법원 판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청원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한창민 위원 짧게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한창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전문위원과 공정위 의견에서 대부분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의견 첫 번째 것을 보면 사고기록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기 위한

후속적인 의견 개진이나 이런 게 이어질 예정입니까? 그냥 여기에 담기는 좀 그렇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DR 장치 장착 의무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해서 도입을 해서 2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입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기록장치에 그런 내용들이 추가할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한번 관계부처에 이 청원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담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담기도록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현우** 마지막 사항입니다.

58쪽,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각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통적으로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으나 청원안은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의원안 및 청원안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과 시점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이 결함 등의 추정 및 입증책임에 관한 특례뿐만 아니라 자료제출명령, 비밀유지명령 등 새로운 소송절차를 도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각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함 등의 추정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과 자료제출명령 등 손해배상소송의 증거조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구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례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결함 등의 추정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 적용례의 경우 개정규정을 법 시행 후 공급되는 제조물부터 적용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법 시행 전 공급된 제조물의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법 시행 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는 경우 법 시행 전 공급된 제조물의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으나 제조업자에게 제품 공급 당시 예상하지 못한 책임이 적용되어 기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과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규정 적용례의 경우 자료제출명령 등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채현일·서왕진·염태영·이현승 의원안은 해당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은 소송에서의 증거수집 및 제출자료의 보호절차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시행일 관련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료제출명령 등의 같은 경우도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자는 적용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결함 추정, 입증책임 관련해서는 이 경우에도 저희는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공급 시점을 언제로 하는가 이것도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현재 문제가 있는 제조물책임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를 보니까,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발언을 조금 자체해 주시는 것도 있기는 한데 공감대가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논의를 더 좁히지 않아도 충분히 비슷한 의견들도 있고 조금 집중 토의를 하면 결론을 빨리 낼 수도 있을 것 같더라는 확실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논의하면서 입증책임 완화 부분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비밀유지 위반 경우에도 형량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하나……

저희 다음에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는 저희가 결함 등의 입증책임 적용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고 사실 공정위에서는 후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 이후의 것으로만 적용하자 이렇게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깊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예, 추후에 할 텐데……

○한창민 위원 왜 그러냐면 피해자 보호 측면에 대한 부분이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소위원장 서일준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의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4항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현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형벌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의 전환 관련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내용은 형벌을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총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형벌규정 중의 일부를 폐지하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겁니다.

다만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위반행위의 경우라도 시정조치는 존속시키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벌로 규율하도록 하는 선행징제재-후형벌규정 체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총론입니다.

개정안들은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입법안들로 이 중 김남근 의원안은 정부가 2025년 9월, 12월에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긍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유로운 경제활동 장려입니다. 경제규제 영역에서 형벌 의존도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진국과 유사한 체계로 경제형벌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현재 과징금이나 동의의결,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교한 규제체계 설정입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우선 행정제재를 가하여 법 위반 상태의 해소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제재수단을 비례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수사·재판 절차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행정제재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므로 위반행위의 중지와 시정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부정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과징금·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개선사항은 과징금·과태료 수납이 원활함을 전제로 하는데 공정위의 과징금·과태료 수납은 연례적으로 저조하여 매년 우리 위원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저하 우려입니다.

형벌은 인신구속과 전과기록의 발생으로 심리적 강제력이 강하나 과징금과 과태료는 자본력이 풍부한 사업자에게는 단순히 사업비용 수준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권한 집중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판단을 전제로 하나 행정처분은 공정위의 전속 권한이므로 재량과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의 일관성입니다.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절차적 위반에 불과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조문이 이에 전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다음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구현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별 법률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부제출안, 김남근 의원안, 윤한홍 의원안에 관한 보고입니다.

개정안들은 형벌 폐지 또는 과징금 신설 등의 대상 행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현행은 형벌·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제출안은 형벌을 폐지하되 과징금은 존속하고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안은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존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의 차이점은 정부제출안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행위의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되 과징금만 존속하고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형벌의 상한을 완화하며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과 달리 김남근 의원안은 이를 포함하여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등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일부 과징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 위반에 대하여 형벌규정을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할지에 관하여는 위반행위에 따른 법익 침해의 정도나 고의성 여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많은 형벌 폐지 조항을 담고 있는 김남근 의원안처럼 개정하더라도 여전히 형벌로 규제되는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은데 여전히 형벌로 규제하는 위반행위와 개정안에 따라 형벌이 폐지되는 위반행위 간에 서로 다른 제재로 규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시로 개정안은 시장 파급력이 높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선행정제재로 전환하고 있고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등은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총론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차와 2차 관계기관 간에 합의한 안을 지금 관련 법령들을 형벌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올렸고요. 추가적으로 또 3차 계속 이렇게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과징금 수납률이 작다는 것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산 시점에서 딱 끊어서 그 당시에 과징금 징수액 통계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 그거는 대부분 계산 시점을 끊어 보면 과징금 납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실제 저희한테 최종 징수되는 과징금을 보면 조금 등폭은 있습니다만 70~95% 사이고요. 작년 25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82% 수납률이 나왔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실효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말씀하십시오.

○박상혁 위원 85%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형벌로 치면 예를 들면 열 사람 중에 열 사람 다 형벌을 받잖아요. 만약에 구속이 안 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하여튼 형벌의 경우에는 그 조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 다르긴 합니다만 실제 보면 벌금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그게 실질적인 제재가 되는 건지 그거는 평가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85%가 또 그게 제재수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위원님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폐지하는 것 말고 과징금과 관련된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아마 동료 위원님들이 제출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로 종합적으로 될 것이다.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관련돼 가지고 보면 최근에 별로 사례가 없다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폐지의 근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걱정되는 분야가 사례가 없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호출자 금지라든지 순환출자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도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예전보다는 발생 빈도가 적고 한 것은 결국 형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향후에 과징금하고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이 담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큰 원칙은 깨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질서가 매우 혼탁해 질 수 있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페이지에 있는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의 경제민주화, 경제질서에 가장 아주 큰 축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했을 때 향후에 우리가 논의하게 될 과징금도, 여기 오늘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오래 전에 손을 봐서, 그때는 아마 과징금보다는 형벌에 무게 중심이 있다 보니까 과징금의 액수도 굉장히 적고 크게 손을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과 비례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이런 큰 우리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휘둘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이 든다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서일준 말씀하십시오.

○이강일 위원 이게 맨 앞에 사실은 내용 자체가 형사벌 사항을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대체하자는 거니까 사실은 뒤에 법안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적용되는 것이 되는 거다, 중간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법을 다루는 문제니까 한번 일독하고 나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셔야지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법 하나하나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어차피 같은 말씀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이렇게 바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것들을 이익형량해 보는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위하력이잖아요.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더 이상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데 지금 경제형벌을 모조리 이렇게 다 과태료로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 돈으로 때우면 되지, 결국 자본가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 돈이 많은 사람, 가진 자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공정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마는 공정위 입장을 들여다보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공정위 현역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히나 퇴직하신 OB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법원이 판단하던 부분을 결국 공정위가 재량의 영역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여기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행정규제라고 하는 것이,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철학적인, 근본적인 고민을 이 자리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말씀드리고 할까요?

○소위원장 서일준 예.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고요. 다만 형벌을 그래도 꼭 필요한 그리고 그동안에 형사제재가 많이 이루어졌던 담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다 징벌이 존치를 하는 거라서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경쟁법 집행이 담합 같은 경우 이외에는 사실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대부분 시지를 포함을 해서 그런 형사제재보다는 행정제재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외부 사례에 비추어서 굉장히 형벌 규정이 과도하게 많은 그런 입법의 히스토리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글로벌 스탠더드하게 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적 제재가 어쨌든 위반 억지력을 형벌이 주는 만큼 또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경제적 제재는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 과징금 상향하는 거나 과징금을 도입하는 그런 법안도 함께 균형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결국은 형벌하고 행정벌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총론만 독해하는 수준으로 하고 마치는 게 어떨겠습니까?

○이강일 위원 예, 총론에 동의하면 나중에 끼워 맞추는 법이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창민 위원 보고받기 전에 다 동의하는 것처럼 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일독하기 전에 공정위 판단에 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전문위원 판단과 공정위 판단이 계속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사실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부분에서 김남근 의원안 수용으로 이렇게 탁 써 버리니까 사실 대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하기 전에 매우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은 건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어떤……

○**한창민 위원** 아까 그러니까 김남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윤한홍 의원님 안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김남근 의원님안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한창민 위원** 그러면 형벌을 다 대체하는 것에 대한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소위원장 서일준** 조금 전에 약간의 형벌하고 행정벌에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견 다음에 디테일하게……

○**한창민 위원** 디테일하게 할 때 다시 점검을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살짝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현우** 14쪽 보시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하도급거래 계약서 서면발급 의무 등 하도급법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 과징금, 과태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형벌 또는 과징금을 폐지하는 대상 위반행위를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쪽을 보시겠습니다.

개정안 비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의 경우 현행은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부 제출안은 형벌 폐지, 과징금 존속, 박상혁 의원님안은 과징금 폐지하되 과태료 신설, 김승원 의원안은 형벌·과징금을 폐지하고 과태료 신설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형벌 또는 과징금 폐지의 대상 위반행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형벌규정을 가장 많이 폐지하는 김승원 의원안처럼 개정하더라도 여전히 형벌로 규제되는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은데 여전히 형벌로 규제하는 위반행위와 개정안에 따라 형벌이 폐지되는 위반행위 간에 서로 다른 제재로 규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법익을 중대하게 해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의 경우 형벌 폐지가 적절한지는 단순 절차 위반과 구분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법안 내용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계속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현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행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안의 경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형벌을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한홍 의원안은 정보공개서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위반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허영 의원안의 경우 규제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7조제3항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대로 하려면 제7조제3항 외에 추가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규정하는 제6조의2도 원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윤한홍 의원안의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형벌 완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은 현행법상 과징금으로 규율이 가능하므로 과태료로 규정할 실익은 적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허영 의원님안 수용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23쪽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행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 등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 제출안의 경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위반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정만 존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의 경우는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경영활동 간섭 금지 위반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규정만 존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선행정제재, 후형벌부과의 원칙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일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정조치의 완료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승원 의원님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구현우 다음, 25쪽입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허영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위반에 대한 형벌 및 과징금 조항 등 법정의무 위반에 대한 다양한 제재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안은 형벌과 과징금의 병과가 가능한 구입 강제행위의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경영활동 간섭의 금지,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을 폐지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존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선 행정제재, 후 형벌부과의 원칙을 전환하도록 도모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일부 타당한 면이 있으나 다만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의 일부 행위는 대리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각 행위의 피해 정도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허영 의원님 안은 수용 입장입니다. 전문위원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현우 27쪽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정부제출안입니다.

정부제출안을 보시면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의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조항을 삭제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의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미이행에 대한 형벌규정을 삭제하여 시정조치 등의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는 경제적 불이익인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에서도 청약철회 대금환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의무화 되어 있어 형벌조항 삭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자료제출 미이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은 행정상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형벌조항의 삭제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전문위원 더 계속……

○전문위원 구현우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끝난 거지요?

○전문위원 구현우 예.

○소위원장 서일준 이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업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형벌조항을 경제별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은 굉장히 업계의 요청을 수용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일면 타당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도 찬성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경제별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심도 깊게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시고, 자료를 꼭 주셔야 됩니다.

뭐나 하면 공정위가 그동안 과태료·과징금 상황에 대해서 매년 보고했던 상황을 보면 수납률 자체가 다 저조해요.

과징금의 경우 23년도에 65%, 24년도에 23% 과태료도 23년에 53%, 24년에 45%에 그치고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해의 것을 그 해에 걷는 것 때문에 다 못 걷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추후에 다 걷었는지 이거를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야 돼요.

과징금과 과태료가 형벌을 피해 갈 수 있는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엔딩 버전, 그래서 최종 얼마를 어떻게 몇 프로를 걷었다 그리고 못 걷은 건 몇 년 이내에 얼마다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계를 줘야 이 법이 통과될 때 위원님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이강일 위원 그다음에 경제별 대상으로 다 바꾸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형벌조항이 존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경제별로 바뀌는 거고 어떤 거는 경제별이 아니라 형사별로 그대로 존치가 돼서 이러한 부분은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쿠팡이 공정위의 조사를 저지하고 방해하는 사건을 봤을 때 이게 법을 잘못 바꿔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줘서, 자본주의 질서 그다음에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위배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이강일 위원 그래서 형벌 대상에 대한 면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이강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 자료를 주셔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다른 위원님.

○박상혁 위원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여러 체계의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판단할 때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판단하게 되면…… 저는 최종적인 납부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반의 횟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거를 위반하는 기업들이나 주체들, 위반자들의 어떤 규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로 대기업들이 그랬던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이렇게 위반의 성격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체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종합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남길 것과 폐지할 것의 어떤 기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과 향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과징금으로 어떤 것들을 남기고 폐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징금이 되어야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 제재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어서……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혹시라도 아까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때우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걸 우리가 함께 여야 위원들이 더 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좀 풍부하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남동일 예, 취지 감안해서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법안 심사할 때 자료제출하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꼭 각 의원님들 방에 방문해서 제출도 하고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법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및 의정기록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강준현 김용만 박대출 박상혁 박성훈 서일준 이강일 전현희 최은석 한창민

○청가 위원(1인)

한민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현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경쟁정책국장 선중규

소비자정책국장 정보름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심판관리관 박세민

임시회의록